

2014. 6. 28, 서울시 행정법총론 총평 및 해설(A책형)

-총평-

2014 서울시 행정법 총론은 2014년 치러진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문제가 출제되었다. 수업시간에 박원순시장이 재선했으므로 작년 시험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 같다. 행정법의 경우 지문은 2013보다 길어 졌지만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정상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부득이하게 실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95점, 최소한 90점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대부분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닌 기존 기출문제집에서 언급된 문제들이었다. 17번 행정심판위원회를 찾는 문제가 조금은 혼동될 수 있었던 문제이었다. 행정법의 공식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이 합격의 소스라고 생각한다.

1.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2

- ① 법률우위원칙      ② 의회유보원칙      ③ 침해유보원칙
- ④ 과잉금지원칙      ⑤ 신뢰보호원칙

[해설] 정답 ② 헌법재판소는 TV수신료 사건에서 중요, 본질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TV수신료를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 ①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한다.
- ② 사인의 행위만으로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입신고수리여부 심사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와 허가제의 허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⑤ 현재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해설] 정답 ③ 대법원은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며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9.6.18, 2008두10997 전합).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이 하는 행위 중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사인의 행위만으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는 반면 사인의 행위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와 결합하여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완화된 허가제로서 일반적인 허가와는 차이가 있다. ⑤ 현행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만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행정행위의 표시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 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은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 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해설] 정답 ③ 통상우편으로 발송된 재심청구기간결정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발송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77.2.22, 76누265). 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②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④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4.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후에 대법원이 그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 위법·무효라고 선언하였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4

- ① 근거 법령이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그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② 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③ 근거 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처분은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 ④ 하자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명백성은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 ⑤ 처분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다.

[해설] 정답 ④ 행정처분을 한 후 처분의 근거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된다는 입장이다(대판 2002.11.8, 2001두3181). ① 사후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하자가 있게 되며 적법한 것이 아니다. ②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부존재와는 무관하다. ⑤ 임의적 판단이 아닌 하자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인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 ①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를 인가라고 한다.
- ②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그 하자는 치유가 된다.
- ③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다.
- ④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행위가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 ⑤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신청을 전제로 한다.

[해설] 정답 ②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가 적법한 경우 인가로 인하여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①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③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와 사법상의 행위가 모두 포함



[해설] 정답 ④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헌재결 1996.2.29, 94헌마213). ① 법규명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총리령, 각부장관이 제정하는 부령으로 구별된다. ②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는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③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개별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될 수 있다. ⑤ 처벌법규의 위임은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결 1995.10.26, 93헌바62).

9. 행정지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④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해설] 정답 ④ 행정지도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서도 인정된다(행정절차법 49조 제2항).

- ①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②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③ 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10.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

-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③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⑤ 처분의 성질상 이유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설] 정답 ⑤ 이유제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5

- ①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이 해당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 ③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 ④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 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⑤ 정보공개 청구인은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①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이 있다. ② 정보공개청구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해관계 있는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③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일정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④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무료가 아니라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12.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을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5

- 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 ②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성이 있는 의무이어야 한다.
- ③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야 한다.
- ④ 의무의 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⑤ 의무를 명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⑤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의 발생을 대집행실행의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대집행할 수 있으므로 의무자는 취소쟁송단계에서 집행금지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①②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③④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인정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13. 행정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 ① 행정조사는 조사를 통해 법령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동법 제4조 제2항. ⑤ 행정조사는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임의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4.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 ①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집행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 ③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④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해설] 정답 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재송절차에 의하여 불복하여야 한다. ①②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의무불이행이 있는 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은 장래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과거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인 형사처벌과 병과할 수 있다.

**15.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2**

- ①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③ 과실개념의 주관화(主觀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 포함된다.
- ⑤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인 경우이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관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0.5.12, 99다70600). 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81.8.25, 80다1598). ③ 국가배상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과실개념의 객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은 평균인의 과실을 의미하는 추상적 과실을 말하는 과실의 주관화가 아닌 객관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여야 한다. ④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광의설이 다수설, 판례이므로 사경제작용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⑤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외형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일 필요가 없으며 외형적으로 직무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6. 손실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3**

-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이 헌법적 근거가 된다.
- ②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한다.
- ③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④ 최근에는 재산권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하였다.
- ⑤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해설] 정답 ③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헌재결 1990.6.25, 89헌마107).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침해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②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공법상, 사법상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종류는 묻지 않

는다. ④ 수물민에 대한 보상처럼 일반적인 보상의 범위보다 확대 되는 생활보상이 인정되고 있다.  
⑤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과거에는 사권설의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공권설의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17.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1**

- 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 ② 해당 행정청이 위치한 구(區)행정심판위원회
-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④ 서울특별시장
- ⑤ 행정심판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시·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와 재결을 한다.

**18. 의무이행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 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 ②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③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상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 ④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의 적용이 있다.
- ⑤ 이행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해설] 정답 ②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와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이므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로 인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다. ①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행정심판이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의무이행심판에서도 사정재결이 인정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⑤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을 명하는 심판으로서 이행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19.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 ①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 ② 1심 법원의 판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 ③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 ④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
- ⑤ 취소소송과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간의 소의 변경은 물론,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② 소의 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①③ ④ 소의 변경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청구기초의 변경이 없어야 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결정을 할때 인정된다. ⑤ 소의 변경은 동종절차 뿐만 아니라 종류가 다른 절차 상호간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항고소송 상호간뿐만 아니라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상호간에도 인정된다.

20.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5

- ①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
- ③ 1일 50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안의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④ 분노관련영업허가를 받은 기존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 ⑤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업자가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을 다투는 경우

[해설] 정답 ⑤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8.4.10. 2008두402). ①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1998.09.04. 97누19588). ③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소각시설입지지역결정·고시와 관련하여 갖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5.03.11. 2003두13489). ④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대판 2006.7.28. 2004두6716).